

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(안)

# 검 토 보 고 서

관광건설전문위원

##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(안)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및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9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9월 14일

### 3. 개정이유

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·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·관리조례에 대하여 법령에 일부 조항이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「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표준(안)」에 의거 개정코져 하는 것임.

### 4. 주요골자

-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 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정 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(안 제3조)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 (안 제4조)
-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·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함 (안 제5조)
- 기금 운용·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토록 조문 신설 (안 제7조 내지 제9조)
-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,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 할 사항 등을 규정함 (안 제10조)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,  
이는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기금  
총람」 지침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,

주요골자에 있어서는,

첫째,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임의대로 예탁관리 할 수 있는 것  
을 충청북도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, (안 제3조)

둘째,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용도를 조례에 명시하여 업무를  
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(안 제4조)

셋째, 기금의 관리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·세출  
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고, (안 제5조)

넷째,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 
운영토록 하였으며, (안 제7~9조)

다섯째,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 
제출토록 하는 등 재해대책기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 
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